

## 학부교양대학운영규정

2019.04.30. 제정 2019.11.18. 일부개정 2020.05.01.일부개정 2023.02.25.일부개정  
2025.05.23.일부개정

<학부교양대학>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 학칙 제2조(편제)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학부교양대학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.)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0.5.1.)

**제2조(기능)** 본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(개정 2020.5.1.)

1. 교양교육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교양교과목 운영 및 학사지원에 관한 사항
3. 삭제 <2020.5.1.>
4. 삭제 <2020.5.1.>
5. 정규/비정규 교양교육과정 연구, 개발, 평가, 환류에 관한 사항
6. 기타 본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3조(기구)** ① 삭제 <2020.5.1.>

② 삭제 <2020.5.1.>

③ 본 대학은 교무와 학사업무 심의 및 교양대학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운영한다.(개정 2020.5.1., 2025.5.23.)

1. 학부교양대학운영위원회

2.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

**3. 교양학점인정심의위원회**

④ 삭제 <2020.5.1.>

⑤ 본 대학은 교양 교육과정 질관리와 체계성 향상을 위해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.(개정 2019.11.18., 2020.5.1.)

⑥ 삭제 <2020.5.1.>

⑦ 삭제 <2020.5.1.>

⑧ 교양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에 필요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(신설 2025.5.23.)

⑨ 교양 교과 및 비교과 과정의 질적 향상과 교양 교육과정의 체계적 연구·개발을 위하여, 단과대학 내에 별도의 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(신설 2025.5.23.)

**제3조의2(교양교육연구센터)** ① 삭제 <2025.5.23.>

② 삭제 <2025.5.23.>

**제3조의3(기초교양클리닉센터)** ① 삭제 <2025.5.23.>

② 삭제 <2025.5.23.>

**제4조(학부교양대학운영위원회)** ① 학부교양대학운영위원회는(이하 “학부운영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. (개정 2019.11.18.)

②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학장이 추천하고 총

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(개정 2019.11.18.)

③ 학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19.11.18., 2020.5.1.)

1. 학부교양대학 교육목표, 발전계획,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
2. 국고 등 사업의 기획 보고
3. 본 규정의 개폐 및 본 대학내규(지침)의 제·개정

④ 회의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학부운영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)** ① 교양교육과정운영위원회(이하 “교양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는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학부교양대학 소속 전임교원 1명 이상, 학부교양대학의 단대 소속 전임교원 1명 이상, 산업체 대표, 재학생 대표, 졸업생 대표 각 1명 이상,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총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(개정 2019.11.18., 2020.5.1. 2023.2.25.)

②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(신설 2019.11.18.)

③ 「교육과정운영규정」 제6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교양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2019.11.18., 2020.5.1. 2023.2.25.)

1. 교양교육과정 개발, 개편, 편성, 개설, 운영, 평가, 환류에 관한 사항
2. 교양교과목 신설.폐지 조정에 관한 사항
3. 삭제 <2020.5.1.>
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회의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교양운영위원회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 (개정 2019.11.18., 2023.2.00.)

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**심의한다.**(개정 2019.11.18., **2025.5.00.**)

⑥ 삭제 (개정 2023.2.25.)

⑦ 삭제 <2020.5.1.>

⑧ 교양운영위원회는 심의·의결된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개편 계획을 교육과정위원회에 상정한다.(신설 2020.5.1., 개정 2023.2.25.)

**제5조의2(교양교육과정개발위원회)** 삭제 <2020.5.1.>

**제5조의3(교양학점인정심의위원회)** ① 교양학점인정심의위원회는(이하 “학점인정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으로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인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학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학점인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국내외 타대학,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교양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
2. 학부교양대학에서 운영하는 융합·프로젝트 기반의 비정형 교과(예: 교양 챌린지 교과 등) 또는 학점인정형 프로그램(예: 교양 챌린지 플러스 학기제 등)에 참여한 학생의 교양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
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④ 회의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으며 학점인정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.

[본조 신설 2025.5.23.]

제6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「학부교양대학운영위원회규정」은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.